

목 차

■ 지평 소식 ■

- '201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상' 4
- 최세훈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영입 5
- 김진희 외국변호사 영입 6
- 오규창 외국변호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7
- 신재형 변호사 영입 8
- 소셜벤처기업 대상 법률교육 外 9

■ 주요 업무 사례 ■

- KB금융을 대리하여 라오스 진출 자문 12
-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 13
- LS니코동제련(주) 및 Vertical Manufacturing LLC를 대리하여 (주)화창 매각 자문 14
-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자문 15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화력발전소 EPC 계약 이행에 관한 자문 16
- Phnom Penh Autonomous Port(프놈펜항만공사) 상장 자문 17
-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ICT가 보유하고 있는 포뉴텍 지분 매각 자문 18
-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의약품 전문 판매업체인 칸메드 흡수합병 자문 19
-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를 대리하여 에머슨퍼시픽의 외자유치시 1,806억 규모의 제3자배정 신주 인수 자문 20

■ 법률 논단 ■

- [조세]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무상소각되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21

■ 최신 판례 ■

- [민사] 구분점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8
- [건설부동산]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명의신탁하고, 선의의 분양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효력..... 31
- [형사] 검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구두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 35
- [지적재산권]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38
- [보험] 연금보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및 개별약정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42
- [노사관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 인정 등..... 49
- [도산]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58

■ 최신 법령 ■

- [노사관계]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복지법 시행령 개정..... 62
- [M&A]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회사법 특례 등..... 66
- [공정거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68
- [보험] 예금자보호법 개정..... 72

■ 단신 ■

- 김상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진흥세미나'에서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의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 73
- 최승수 변호사,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음악콘텐츠법연구회'와 공저로 '음악콘텐츠와 법' 발간 74
- 김성수 변호사, 금연강사 보수교육에서 '금연법규 및 소송사례'를 주제로 강의 外..... 75
- 심희정, 정철 변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교육에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를 주제로 강의..... 76
- 최진숙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77
- 이형규 변호사, 한국거래소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 TF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 外..... 78
- 이형규, 반정현 변호사,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1월호에 '자본시장법의 현안 분석 (1) : 공모와 전문투자자 개념 변화' 게재..... 79
- 정원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을 주제로 강의..... 80
- 강호정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81
- 권순철 변호사, 신규변호사 실무연수강좌에서 '도산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 82
- 이광선 변호사, M&A 경영지도사 과정에서 'M&A와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 外..... 83
- 배지영 변호사, '2016년 중동·이란시장 진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란 법인설립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발표..... 84

■ 지평 소식 ■

'201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상'

지평은 지난 1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국토일보 - \[201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법무법인 지평\(2015. 12. 18.\)](#)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최세훈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영입



(법무법인 지평 최세훈 변호사)

지평은 지난 2월 22일 형사팀에 최세훈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영입하였습니다.

최세훈 변호사는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을 거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서 정부의 주요한 입법 과정을 심의, 지원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 및 환경 분야 수사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이후 부산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홍성지청장, 포항지청장, 고양지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 수사로 대통령상을, 지적재산권 분야 수사로 검찰총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송파트에서 형사분야, 특히 특별 수사, 환경, 지적재산권, 기업거래 분야 등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김진희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진희](#) 외국변호사)

지평은 지난 2월 15일 국제중재팀에 김진희 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국제분쟁팀장으로 2016년 2월 지평에 합류한 소송 전문 외국변호사입니다. 2005년 U.C. Berkeley Law School JD 과정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San Francisco 및 Orange County에 소재한 대형 국제 로펌에서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았으며, 2009년 귀국한 후로는 LCD 세계 1위 기업인 LG디스플레이의 Global Litigation팀장으로 각종 해외 소송 및 분쟁을 총괄 관리, 진행한 소송 전문가입니다.

■ 지평 소식 ■

오규창 외국변호사 영입 및 미얀마 현지법인 파견



(법무법인 지평 [오규창 외국변호사](#))

지평은 지난 1월 4일 오규창 외국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오규창 외국변호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규창 외국변호사는 2012년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사업부에서 라이선싱, 외주개발, IP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지평 미얀마팀에 소속되어 해외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신재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신재형 변호사](#))

지평은 지난 1월 4일 신재형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신재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1기를 수료한 후 법무법인 총정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서 건설·부동산, 형사 및 행정 소송, 기업 일반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소셜벤처기업 대상 법률교육

지평은 2015년 10월부터 루트임팩트와 함께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Law-큰롤'이라는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6일에는 이태현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을 주제로, 1월 13일에는 구자형 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이슈'를 주제로, 2월 3일에는 정원 변호사가 '분쟁사례,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2015 사랑의 연탄나눔' 참여

지평 변호사와 직원 30여 명은 지난 12월 5일 '2015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지평은 1가구에 200장씩 9가구 총 1,8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은 2005년부터 참여하여 11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지평, '2015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2015. 12. 18.)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활동

지평은 지난 12월 5일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빵을 경성교회, 능곡침례교회, 산마루교회, 의정부하늘샘교회, 서기대외국인유학생, 연희동, 남가좌동, 흥은동 이웃들 등 나눔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지평은 매월 1회씩 '제빵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 주요 업무 사례 ■

KB금융을 대리하여 라오스 진출 자문

지평 증권금융팀과 라오스팀, 라오스 로펌 Lao Law & Consultancy Group이 협력하여 KB금융의 라오스 진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조선비즈 - KB금융, 라오스 자동차 할부시장 진출\(2016. 2. 4.\)](#)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 매입 자문

지평은 하나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폴란드 브로츠와프 소재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를 매입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럽 지역 부동산 실물거래 투자 성공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서울경제 - \[단독\] 국내 기관, 아마존 물류센터 산다\(2016. 1. 4.\)](#)

[담당 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유정민 변호사



이훈 외국변호사



최정묵 외국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 주요 업무 사례 ■

LS니꼬동제련(주) 및 Vertical Manufacturing LLC를 대리하여 (주)화창 매각 자문

지평은 LS니꼬동제련(주) 및 Vertical Manufacturing LLC를 대리하여 (주)화창 매각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LS니꼬동제련, 풍전비철에 자회사 화창 매각(2016. 1. 19.)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태현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노충욱 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자문

지평은 엔바이오컨스를 대리하여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한 수처리 기업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대구시, 中 물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2015. 12. 28.)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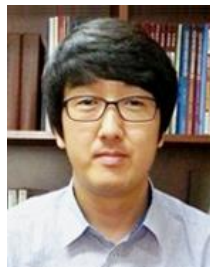
정철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채광호 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화력발전소 EPC 계약 이행에 관한 자문

지평은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필리핀화력발전소 EPC 계약 이행에 관한 법률의견(Legal opinion)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포스코건설, 필리핀 마신록 석탄화력발전 EPC계약 체결\(2015. 12. 1.\)](#)

[담당 변호사]



황인영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



노중욱 외국변호사



남유선 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Phnom Penh Autonomous Port(프놈펜항만공사) 상장 자문

지평은 Phnom Penh Autonomous Port(프놈펜항만공사)의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상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PAP는 캄보디아 증권거래소에 세 번째로 상장된 기업으로, 캄보디아 공기업으로서 지평이 자문한 캄보디아 제1호 상장기업인 PPWSA(프놈펜수도청)에 이어 두 번째 상장입니다.

[관련 기사]

- 파이낸셜뉴스 - 유안타증권 "자사 주관 캄보디아 프놈펜항만공사 현지 거래소 상장"(2015. 12. 10)
- 연합인포맥스 - 유안타증권 주관 캄보디아 3호 IPO 성공...프놈펜항만공사 상장(2015. 12. 10)
- 서울파이낸스 - 유안타증권 주관 프놈펜항만공사 현지 거래소 상장(2015. 12. 10.)
- 헤럴드경제 - 유안타증권 주관 캄보디아 3호 프놈펜항만공사 IPO(기업공개)(2015. 12. 10.)
- 머니투데이 - 유안타증권, 캄보디아거래소 3호 IPO 주관(2015. 12. 10.)
- 서울경제 - [증권가소식]유안타증권, 캄보디아 증시 3호 IPO 성공적 마무리(2015. 12. 10.)
- 이데일리 - 유안타증권, 캄보디아 현지 거래소 3호 IPO 성공적 상장(2015. 12. 10.)
- 연합뉴스 - 캄보디아 3번째 상장사 탄생...한국인이 뒷받침(2015. 12. 10.)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반기일 외국변호사



최정묵 외국변호사

CHEA Somala
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ICT가 보유하고 있는 포뉴텍 지분 매각 자문

지평은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포스코ICT가 보유하고 있는 포뉴텍 지분의 매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더벨 - 석원산업, 포뉴텍 550억원에 인수\(2015. 12. 11.\)](#)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윤국정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의약품 전문 판매업체인 칸메드 흡수 합병 자문

지평은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를 대리하여 의약품 전문 판매업체인 칸메드 흡수합병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레고켐-칸메드 합병 임시주총서 승인\(2015. 11. 16.\)](#)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윤국정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를 대리하여 에머슨퍼시픽의 외자유치시 1,806억 규모의 제3자배정 신주 인수 자문

지평은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를 대리하여 에머슨퍼시픽의 외자유치시 1,806억 규모의 제3자배정 신주 인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에머슨퍼시픽, 1800억 투자 유치...중국 최대 민간투자사가 2대 주주로\(2015. 11. 8.\)](#)

[담당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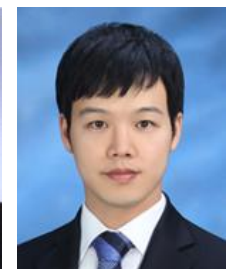
이태현 변호사



윤국정 변호사



정선열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경영동 외국변호사



김옥림 외국변호사



이상희 외국변호사

■ 법률 논단 ■

[조세]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무상소각되면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 지평 박용대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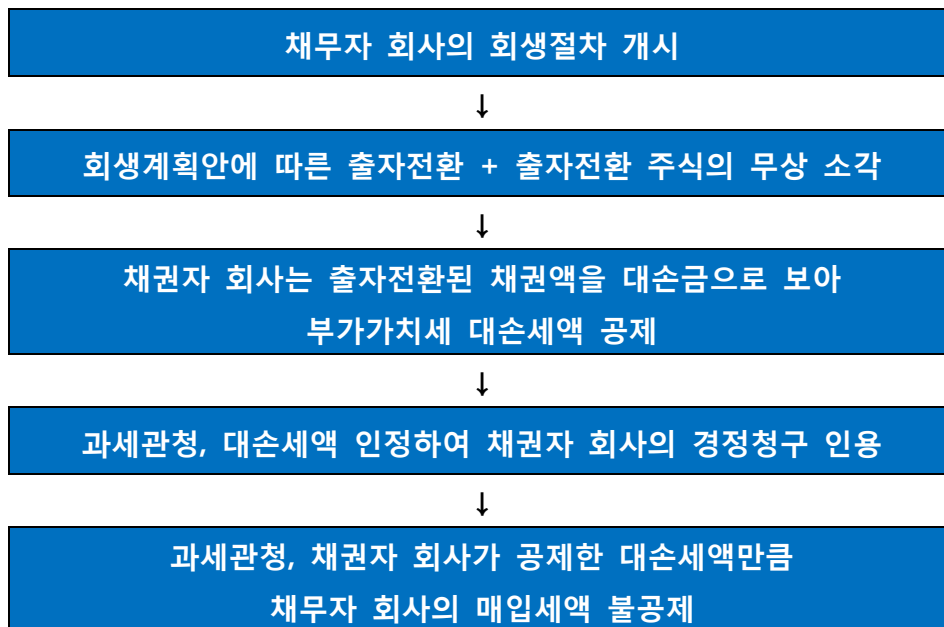
1.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과 관련된 대손금 쟁점

외상매출금, 대여금, 받을 어음 등 채권자가 받을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금액이 대손금입니다. 법인이 경제적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모든 채권을 회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 생깁니다. 법인세법은 법령이 정한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대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액을 줄일 수 있고, 부가가치세액을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들은 납부할 세액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이왕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세법은 납세자의 임의적인 대손 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때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상당 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상당 채권 금액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신주를 무상소각하도록 정해집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존재하였던 종전 채권액은 결국 회수할 수 없는 결과로 확정됩니다. 즉, 채권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고, 또 출자전환 되자마자 무상소각을 당함으로써 결국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채권자 회사는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시기에 자신의 채권액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이미 신고·납부한 후라면 대손세액 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채권자 회사가 공제한 대손세액만큼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결국 회생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직후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채권자 회사는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대손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고, 그 영향으로 채무자 회사는 해당 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처리한 '채권자 회사의 대손세액 공제 인정 및 그로 인한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적법한 처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출자전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무상소각 하였으므로 종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액은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질은 마치 대손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출자전환은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채 조정방법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볼 것인지, 조세법령이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지는 현행 세법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대손금'에 따른 세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즉, 채권자 회사가 부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회사가 부담할 것인가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은 법인세법이 정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 10921 판결, 이하 '대상판결').

위 사안을 판단한 조세심판원은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은 법인세법이 정한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대상판결은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대손금'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5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된 것일 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인 한 유형이다. 이는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같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

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그런데 사안에서 회생담보권 및 회생 채권액 중 일부 면제, 일부 현금변제를 예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회생계획안이 정하고 있으므로 면제 내지 현금변제를 하고 남은 나머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구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은 ① 회생계획안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이 있게 되면 출자전환하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의 동의 즉,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로써 이해관계인들은 출자전환으로 해당 채무를 소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그 소멸되는 채권액은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이고, ④ 이러한 채무 소멸은 문언대로 채무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의미이지, 존재하는 채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채권자 회사의 처지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 신청, 회생계획안 인가 등으로 인해 그 채권 중 상당부분이 출자 전환되고, 또 그렇게 교부받은 신주를 곧바로 무상소각을 하는 것이므로 결국 출자전환된 채권액만큼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위와 같이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은 마치 '대손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출자전환하는 채권에 관하여 '대손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출자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멸되는 채권액은 법인세법 등이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1) 먼저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모든 채권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등이 정한 '대손금'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소멸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령 문언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소멸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2) 출자전환은 그 법리상 채권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 채권액으로 출자를 하여 신주를 교부받는 것이고 그것으로써 기왕의 채권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자전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으로 종전 채무는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여 채권자는 신주를 교부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채권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지, 채권은 유지되면서 회수불능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3) 출자전환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소멸되는 채무액의 범위도 결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상 사안의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채권의 변제에 같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소멸되는 채권의 범

위도 당해 채권 전부인 것이지, 발행되는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4) 한편 현행법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소각' 한 것을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대손금'으로 보도록 법인세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적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한다는 실질은 '대손금'의 성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검토를 함에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회생절차라는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들의 상당 수는 M&A를 통해 새로운 인수인을 찾게 되는데, 새 인수인은 종전의 채무가 모두 조정된 것을 전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자전환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면 채무자 회사를 인수한 새 인수인은 종전 채권자들의 대손금 처리, 그로 인한 채무자 회사의 매입세액 불공제 경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 인수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입법론적으로도 채권자가 손해를 덜 보도록 채무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기왕의 채무 조정으로 기존의 채무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대상판결이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소각' 하였다면, 그로 인해 기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호가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타당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4. 결 론

본 사안처럼 법인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고, 교부받은 신주를 무상소각하는 경우는 채무자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조세문제는

현실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사안이나 다른 유사 사안의 상소 절차에서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현행 법령 규정과 출자전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출자전환을 마치고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종전에 존재하였던 채권자의 채권은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권이 존재하는데 회수불능이 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정한 '대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소각 되었다고 하여 그 대상 채권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신 판례 ■

[민사] 구분점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박영주 변호사 | 구정모 변호사

1. 사실관계

乙은 서울 중구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乙이 임차한 32개 구분점포 중 5개 구분점포는 丙의 소유였는데, 乙은 丙으로부터 위 5개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5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09년 12월 20일 작성되었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 내용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구분점포별로 보증금 및 월 차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분점포의 계약서상 면적이 달라 그에 비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정하였기 때문이고, 계약서상 면적이 동일한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보증금 및 월 차임도 동일하였습니다.

위 5개 구분점포에 포함된 특정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은 3,110만 원으로서 구 상가임대차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가 정한 기준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乙이 丙으로부터 임차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은 1억 1,790만 원으로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丙의 채권자인 甲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구 상가임대차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

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3. 판시사항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은, 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丙 소유의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관계 역시 그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로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도 구분점포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비록 乙이 위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위 구분점포 각각을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이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구 상가임대차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상가임대차법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인 데다, 특히 제14조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으므로, 乙과 같이 다수의 구분점포를 일괄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해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 최신 판례 ■

[건설부동산]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 지위를 명의신탁하고, 선의의 분양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수분양자 지위 이전의 효력

정원 변호사 | 윤성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A는 피고의 처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의 남동생(즉 A의 시동생)인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B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조합은 위 수분양자 지위 변경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대표자인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대한민국)는 B를 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도하고, 이 사건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권매매계약은 B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선, 일단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

양권이 B에게 귀속된 상태, 즉 수분양권이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¹

-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A와 B 사이에 체결한 분양권매매계약이 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아파트 수분양권은 여전히 A의 소유여서 B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이 B의 책임재산이 아닌 만큼,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외관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¹ 이 조항은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03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서 문구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 조항의 실질적인 의미와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일방당사자" → "어느 한쪽 당사자"; "타방당사자" → "상대방 당사자").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일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이 B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4. 시사점

이 사건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제3자가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A와 B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인 A, B가 그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되고 이 사건 조합은 단지 수분양자 지위 이전을 동의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취지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관계가 당초 위 규정이 예정한 법률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할 정도로 다르지는 않다는 판단하에,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를 유추 내지 확장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만 엄격히 한정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선의의 제3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까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을 유추 내지 확장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파악하는데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 최신 판례 ■

[형사] 검사가 항소심 법정에서 구두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 못 해

이홍재 변호사 | 김선국 변호사

1. 사실관계

검사는,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은 유죄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로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사의 의견과 달리 원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 ① 피고인의 범행수법, ②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 정도, ③ 미합의 등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가벼워 부당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 하였을 뿐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제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 항소장에 기재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이후 변론이 종결된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 없으며, 피고인 측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만 다투었을 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쟁점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3. 판시사항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 제285조, 제286조 제1항, 제287조, 제370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1항, 제2항, 제156조의4, 제156조의7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경우 설령 제1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이유 주장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해설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10412 판결 등 참조).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1항), 항소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원심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7 제1항).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종종 검사가 법정에서 항소이유 전부를 구체적으로 구두로 주장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는 형식적인 구두변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 대상판례 사안에서도 검사가 항소장에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않았고,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므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실질적인 구두변론 없이 형식적으로 항소이유를 개괄적으로 원용하는 방식의 관행을 지적하고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 최신 판례 ■

[지적재산권] 대기업 계열분리 후 대기업의 명칭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최승수 변호사 | 이해원, 허종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그룹은 2001년 2월경 창업주가 별세한 뒤 2001년 6월 30일 창업주의 세 아들이 계열사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하는 형태의 계열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A홀딩스 주식회사(이하 'A홀딩스')는 A그룹 계열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OO도시 가스 주식회사가 2009년 10월 1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상호를 'A홀딩스(영문 상호 : A HOLDINGS CO., LTD.)'로 변경하여 변경 등기를 마쳤고, 2009년 10월 12일에는 한국거래소에 상호변경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신청하여 'A홀딩스'로 변경 상장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지주(이하 'A지주')는 A그룹 계열사인 A산업 주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상호를 'A지주(영문 상호 : A GROUP HOLDINGS CO., LTD.)'로 변경하여 변경 등기를 마쳤습니다.

A홀딩스는 2011년 1월 "A지주의 영문 상호(A GROUP HOLDINGS CO., LTD.)는 A홀딩스의 영문 상호(A HOLDINGS CO., LTD.)와 매우 유사하고, 이는 A지주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것이어서 상법 제23조²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2011년 법원에

²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상호사용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26 사건).

위 소송에서 A지주는 "A라는 표지는 A그룹 계열사 전체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A그룹의 신용이나 명성을 상징하는 표지인데, A그룹 계열분리 이후 A홀딩스만이 A라는 표지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은 A그룹 전체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3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A홀딩스가 제기한 소송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상법 제23조의 '주체오인상호' : 긍정

상법 제23조의 '주체오인상호'로서 사용금지를 청구하려면 '부정한 목적'과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요건인 '부정한 목적'의 의의 및 판단 기준에 관하여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营业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营业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이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营业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³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营业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营业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또한 대법원은 두 번째 요건인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으로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①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②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① A홀딩스의 영문 상호와 A지주의 영문 상호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하고, A홀딩스와 A지주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持株) 사업으로 동일하므로 A지주는 A홀딩스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며, ② A지주는 A홀딩스의 상호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므로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법 제23조에 따라 A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 부정

대법원은 A홀딩스의 청구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이라는 A지주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같이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룹집단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대기업의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해당 대기업의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대기업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기업 계열사들 사이에서 대기업의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A그룹의 'A'라는 표지가 반드시 A지주나 A지주 측 계열사만의 영업표지만을 나타내거나, A지주의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홀딩스 및 그 계열사가 'A'라는 표지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A지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판결의 의의

대기업은 'OO그룹', '△△그룹' 등 계열사들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명칭(OO, △△)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호칭됩니다. 대기업이 상속이나 지배구조 개편 등의 사정으로 계열사가 분리되어 여러 개의 그룹 집단으로 분리될 경우, 그 대표 명칭을 어떤 그룹 집단이 사용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리된 그룹 집단이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룹의 대표 명칭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3다76635 판결은 이러한 사안에서 대기업을 대표하는 명칭을 어떤 그룹 집단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① 상법 제22조에 따라 먼저 상호등기를 한 그룹 집단에게 우선권이 있고, ② 그룹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법 제23조에 따라 상호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③ 단 어느 특정 계열사가 대기업을 대표 명칭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일반인들에게 그 계열사가 대기업을 대표 명칭을 승계한 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쉽게 말하여 OO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OO주식회사가 OO이라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계열사가 대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계열사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이유로 대표 명칭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 최신 판례 ■

[보험] 연금보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및 개별약정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배성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 25. 피고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함. 이 사건 보험은 '원고가 10년 동안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동안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원고가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임. 원고는 보험료를 완납하고 2013. 1. 25.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함.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9조 제1항: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19조 제2항: 연금의 지급형태는 정액형, 체증형, 혼합형 중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른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위 각 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연금액은 복잡한 수학적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액은 보험료 중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즉 책임준비금의 액수와 연금 지급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책임준비금 자체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의 '보

상구분'란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이 사건 보험증권은 2개의 점선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접히게 되어 있고, 원고는 그 중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연금액에 관한 위 기재는 2단 부분에 있었음.

한편, 피고회사의 전산정보(상품보장내역)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동종 보험 상품의 보험증권에는 그 2단 부분에 이 사건 보험증권의 '보상구분'란 기재와 유사한 기재가 있으며 그 3단 부분에 "해당 납입일자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기준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x 125%: 현행 10.625%)의 변동 및 계약변경이 있을 경우 상기 예정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2. 원고의 청구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연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관한 약관 내용을 피고로부터 설명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험증권 2단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3. 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연금액 계산에 관한 약관 조항 설명의무 불이행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지, ②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확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증권의 3단 부분이 훼손된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며 위 증권 일부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입니다.

나. 약관 설명의무 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판단

이 쟁점에 대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
-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

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만일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하여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그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4조).

-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확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19조 제2항 단서는 정액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연금액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체증형이나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 외에 연금액의 변동 요인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앞서와 같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단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제19조 제1항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과 관련이 있지만, 이 조항은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액에 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개별약정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 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 이 사건 보험증권은 그 일부가 훼손된 채로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앞서 본 피고의 전산 정보(상품보장내역)의 기재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증권 중 훼손된 부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에 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증권이 그 전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여기에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훼손되어 그 일부만이 제출된 이 사건 보험증권에 3개월마다 1,821,380원씩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대상판결의 결론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와 개별약정, 일부가 훼손된 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해설

우선 대상판결은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약관규제법 제16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거나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보험자가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데 그치는 것이며,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장이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분명히 밝히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에 관해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 자체의 계산에 관한 부분이므로 만약 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그동안 혼동되어 왔던 약관 설명의무 불이행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의 성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위 사실을 주장하는 보험금 청구자 측에 있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증권 2단 부분에 지급 연금액이 확정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금액은 예시에 불과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가 해당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위 보험증권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약정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 최신 판례 ■

[노사관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지회의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 등

이광선 변호사 | 구자형 변호사

1.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가.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 6명은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1, 2심은, ①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독자적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②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상판

결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뿐 아니라 ②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여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도 산별노조 지부가 기업별 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등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춰 독립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에는 5명의 대법관이 제시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만을 허용하므로, 산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뿐이며,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에 한해 자체 결의로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반대의견은, 설령 다수의견을 따르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적인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하여 활동하는 등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이를 추구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 유지의 필요성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만,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산별노조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친다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산별노조를 이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전국OOOOO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원고가 2010년 8월 47개 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은 업체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매월 8만 원~15만 원의 보조비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2012년 3월 2일 이 사건 단체협약상 보조비 지급조항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사무보조비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해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태양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운영비 원조가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운영비 원조를 통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즉, 사용자의 원조행위는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견해(형식설)와 형식적으로 사용자에게 의한 운영비원조 등이 있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실질설)가 대립하여 왔습니다.

행정청은 형식설의 입장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왔으며, 하급심 재판례도 대체로 형식설의 입장에서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수긍하여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형식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가 정한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에 비용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종래 일부 하급심 판결은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에 수도, 전기요금, 냉난방비와 같은 사무실 관련 비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이란 전기요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데 이어(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 109531 판결), 대상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의 해석상으로도 비용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과 운영비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자에게 의한 유무형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사무실 시설, 비품을 넘어서는 비용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이러한 지원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의 결과라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는 점을 분명히 한 이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지원행위를 재검토하여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가. 사건의 경과

대상판결들은 한국지엠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입니다. 한국지엠은 월 기본급의 700%와 전년도의 인사등급에 따라 결정된 인상분을 해당 연도의 업적연봉으로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위 인상분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각각 A 등급은 월 기본급의 100%, B 등급 75%, C 등급 50%, D 등급 25%, E 등급 0%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연봉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과 부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09나6914 판결)을 선고하여 엇갈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이 업적연봉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정하였고 대상판결들은 그에 따라 통일된 판단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들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여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임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금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한국지엠의 업적연봉은 해당 연도의 근무성과 관계없이 전년도에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해당 연도 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그 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지급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업적연봉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엇갈린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연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업적연봉이 정해진다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업적연봉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업적연봉이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전년도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상판결들도 이를 고려하여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나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년도 말이나 당해 연도 초에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업적연봉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정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워졌으며, 재직자성 기타 지급조건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가. 쟁점

대상판결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둘째,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쟁점은 위 3.에서 다루고 있는 업적연봉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임금피크제 부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사건의 경위 및 대상판결의 요지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교육원 지부는 2006년 10월 9일 '임금피크제 및 공모시행제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만 58세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0나117476 판결)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보수의 인상이 아니라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므로 교육원이 구 한국○○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절차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교육원의 설립 목적과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

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교육원의 설립근거 법률인 한국OO교육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년연장 및 예산변경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임금피크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노사합의)은 교육원 및 그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년연장에 관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사안에서 개정 인사규정은 물론 정년연장을 규정한 단체협약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269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정하고 있는 설립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의 예산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못한 개정 인사규정 및 기존 인사규정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그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산업인력공단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 연장의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예산지출이 감소되는 대상판결과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써 사실상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단체협약의 상위에 놓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경우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법률상·내부규정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 최신 판례 ■

[도산]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배성진 변호사 | 이강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이하 '공동운영 지침')에 의하여 2009년 2월 20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회사에 보증금액 19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채무자회사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금')을 대출받음. 공동운영 지침 제19조 제1항 본문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자금 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을 부여하며, 지원기업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기업을 전환된 경우에도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자율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채무자회사는 2011년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년 7월 28일 같은 법원 2011회합6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재항고인은 2011년 7월 28일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99,416,38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됨. 재항고인은 2011년 9월 15일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함.

회생법원은 2012년 9월 17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함.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자회사가 재항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액수는 52,209,697원이고, 회생채권(이 사건 구상금채권 포함) 액수는 627,437,739원임. 이 사건 회생계획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E은행으로부터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을 양도받음)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음.

재항고인은 2012년 9월 28일 재항고인이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회생계획안에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항고법원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함.

2. 쟁점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3. 판시사항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해설

재항고인은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신규자금 지원을 하였고, 앞서 본 공동운영 지침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회사에 투입한 신규자금은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변제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전문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에서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동운영 지침에 따른 합의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앞서 본 공정·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실질적인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공정·형평성'의 의미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의 법리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실시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후문을 위반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고려할 의무가 없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공정·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달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달까지 법원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공정·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2. 29. 자 2014마1157 결정](#)

■ 최신 법령 ■

[노사관계]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복지법 시행령 개정

이광선 변호사 | 임이지 변호사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

2016년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정년이 60세 미만인 것을 전제로 하여 도입된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이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제도(한시적) 도입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8조의2 신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100분의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제28조의3 신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청년층 구직자의 신규채

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35조제7호 신설, 제37조의2제1항).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근무 형태 변경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고용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라.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 육아휴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개월만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최초 3개월로 연장됨으로써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순차적인 육아휴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제도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3412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 이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및 손실보전거래 상품에 관한 사항과 예탁된 우리사주의 대여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우리사주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이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사주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이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우선 배정 근거 마련되었습니다(제14조제2항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 등으로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 실시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대한 출연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생산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 실시회사나 그 주주 등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조합원이 적립하여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사용한 우리사주 취득 기한이 연장(제17조제2항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특정 연도에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그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취득기한이 짧아서 우리사주조합원은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등에 의존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해 왔습니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은 그 약정한 기간 종료일 이후의 다음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적립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의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예탁된 우리사주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부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초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도록 그 손실보전거래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 예탁된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 및 대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24조의5 및 제24조의6 신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수탁기관을 통하여 예탁한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차거래의 중개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를 예탁 받은 수탁기관은 조합 또는 조합원의 계산에 따라 우리사주 수의 한도에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대여를 하도록 대여방법 및 대여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최신 법령 ■

[M&A]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회사법 특례 등

정철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1. 주요 내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2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특별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특별법 제4조). 과잉공급이란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뜻하고(특별법 제2조 제4호), 사업재편이란 합병, 분할, 신사업 진출 등 활동을 의미하는데(특별법 제2조 제2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므로 추후 제정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특별법 제9조 제1항).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잉공급여부 판단 등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게 되는데, 경영권의 승계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특별법 제9조 제6항).

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분할, 특별법 제15조). 또한, 소규모 합병의 요건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완화하고, 간이합병의 요건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것”을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그 외 특별법은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위한 주주총회 관련 절차를 완화하고, 합병 등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한 다수의 절차 관련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18조 내지 제20조).

다. 기타 지원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게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27조 및 제28조).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여부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32조 제1항). 또한,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33조 제1항).

2. 다운로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최신 법령 ■

[공정거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김상준 변호사 | 김우연 변호사

1. 주요 내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16년 2월 12일 공포되어 금년 8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이 고령화되고, 경제활력 저하로 새로운 산업과 전문기업의 탄생이 지연되는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입니다.

특별법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1조 내지 제25조).

가. 지주회사 관련 특례

첫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① 부채비율을 제한하고(자본총액의 200%) ②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두며(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 ③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⁴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가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합병, 분할, 설립

⁴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간 위 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유예합니다(제21조). 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① 유예기간 동안 200%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있고 ②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해당하는만큼의 많은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도 자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특례는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두고(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 ②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⁵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① 3년간 손자보유주식 기준의 적용을 유예하고 ②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고 피출자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때에는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합니다(제22조).

셋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사의 지분소유가 금지되고,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만 허용됩니다.⁶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i)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고 (ii)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며 (iii)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때에는 증손회사 100% 소유규제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합니다(제23조).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승인기업인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에 50% 이상 출자를 하거나, 2개 이하의 승인기업(손자회사)이 증손회사에 50%씩 공동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관련 특례

⁵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⁶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호·순환출자를 당해 출자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⁷

그러나 특별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과정에서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호·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해소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제24조).

또한 공정거래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채무보증을 이미 받고 있는 회사가 채무보증제한기업으로 신규 지정 또는 편입될 경우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에 동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연장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부실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

2. 적용범위 및 유의 사항

특별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과잉공급'과 '사업재편'의 의미와 외연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제4조, 제2조 제2호 및 제4호). 따라서 향후 본법에 따라 제정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행령 및 지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⁷ 공정거래법 제9조 및 제9조의2

한편 특별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어, 기업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경영권의 부정 승계,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아야 하고, 승인 이후 이러한 사정이 판명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

■ 최신 법령 ■

[보험] 예금자보호법 개정

배성진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1. 주요 내용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22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의 최저보장금액 및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 예금보험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경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예탁받는 금원은 예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이 마련되었고(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4항),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및 부보금융회사가 과납 보험료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납부한 날로부터 3년)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7항).

개정조항 중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청구권 및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2. 다운로드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단신 ■

김상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진흥세미나'에서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의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



(법무법인 지평 김상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한승혁 외국변호사는 지난 12월 10일 베트남 SCIC(국가자본투자공사)가 주최한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진흥세미나'에서 '베트남 국영기업 투자의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최승수 변호사,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음악콘텐츠법연구회'와 공저로
'음악콘텐츠와 법' 발간**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1월 4일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음악콘텐츠법연구회'와 공저로 '음악콘텐츠와 법'을 발간하였습니다.

음악콘텐츠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한 논문집으로, '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에 관한 최승수 변호사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금연강사 보수교육에서 '금연법규 및 소송사례'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월 21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칼리지에서 열린 금연강사 보수교육에서 '금연법규 및 소송사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주최로 열린 '직무 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피력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주최로 열린 '직무 능력과 성과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날 논의자료는 향후 고용노동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이드북과 지침 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 [이데일리 - \[포토\]정부 통상해고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2015. 12. 30\)](#)

■ 단신 ■

심희정, 정철 변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교육에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정철 변호사)

심희정, 정철 변호사는 지난 12월 9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교육에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최진숙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최진숙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는 지난 1월 21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 단신 ■

이행규 변호사, 한국거래소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 TF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1월 19일 한국거래소의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TF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TF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 대해 나라별로 구성되었고, 이행규 변호사는 베트남 담당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 한국거래소, 아시아 우량기업 상장유치 TF 출범\(2016. 1. 19.\)](#)

이행규 변호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기회의 땅, 인도차이나 반도'를 주제로 강연

이행규 변호사는 지난 2월 6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임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기회의 땅, 인도차이나 반도'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 단신 ■

이행규, 반정현 변호사,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1월호에 '자본시장법의 현안 분석 (1) : 공모와 전문투자자 개념 변화' 게재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이행규, 반정현 변호사가 함께 작성한 '자본시장법의 현안 분석 (1) : 공모와 전문투자자 개념 변화'가 서울대 금융법센터 BFL 제75호(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단신 ■

정원 변호사, 사법연수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

정원 변호사는 지난 12월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강호정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법인 지평 [강호정 변호사](#))

강호정 변호사는 지난 12월 30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호정 변호사는 현재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로, 피해자보상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단신 ■

권순철 변호사, 신규변호사 실무연수강좌에서 '도산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권순철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12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신규변호사 실무연수 강좌에서 '도산법 개관'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이광선 변호사, M&A 경영지도사 과정에서 'M&A와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12월 15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M&A 경영지도사 과정에서 'M&A와 노동법'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엘지씨엔에스 법무세미나에서 '사내하도급 등 최근 노동이슈'를 주제로 강연

이광선 변호사는 지난 12월 10일 엘지씨엔에스 법무세미나에서 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등 최근 노동이슈'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 단신 ■

배지영 변호사, '2016년 중동·이란시장 진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란 법인설립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발표(법무법인 지평 [배지영 변호사](#))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1월 20일 KOTRA에서 주최한 '2016년 중동·이란시장 진출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란 법인설립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배지영 변호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이슬람법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Tawarruq(이슬람 대출) : current issues and application'을 주제로 발표

배지영 변호사는 지난 12월 10일 '국제유가 하락과 중동 경제의 향방'을 주제로 개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이슬람법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Tawarruq(이슬람 대출) : current issues and application'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뉴스통신 - 중동 금융협력 방안 모색 'KIEP-이슬람법학회' 세미나 개최\(2015. 12. 10.\)](#)